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4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 : 임오경 · 이수진 · 김승원

한준호 · 김홍결 · 박성준

서삼석 · 한병도 · 양정숙

장철민 · 정청래 · 윤후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하 "선수 등"이라 함)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징계 관련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성폭력, 폭력 등 사건의가해 당사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속 단체를 옮겨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하 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선 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8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요청"을 "요청, 제3항에 따른 징계 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서 선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징계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 등의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징계 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해당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생 략)	시책의 마련)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
	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
	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
	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
	실적,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u>.</u>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①·② (생 략)	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서 선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을 요청하는 경우 징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선수 등의 성폭력 등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u>요청</u>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
한 징계 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해당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
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u>4</u>
요청, 제3항에 따른 징
계 정보의 제공